

계약 규정 (예) 일부개정 (안)

1. 개정이유

- 「국가계약법」을 준용하여 입찰보증금 등 보증 기관 확대

2. 주요골자

-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, 공간정보산업협회, 한국해양진흥공사, 조달기업 공제조합의 보증서 수취 가능(제51조 제1항 제4호)

3. 시행일 : 이사회 의결일

계약 규정(예) 일부개정(안)

「계약 규정(예)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1조제1항제4호더목 중 “「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”를 “「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산수리협회”로 하고, 같은 호에 서목부터 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서. 「폐기물관리법」 제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
- 어. 「공간정보산업 진흥법」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
- 저. 「한국해양진흥공사법」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
- 처.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의2에 따른 조달기업공제조합

부칙

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「계약 규정(예)」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	개정이유
<p>제51조(입찰보증금) ①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현금(채신관서 또는 「은행법」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, 외화(수출입시에 한한다. 이하 같다)로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정한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다.</p> <p>1. ~ 3. <생략></p> <p>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</p> <p>가. ~ 너. <생략></p> <p><u>다. 「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</u></p> <p>러. ~ 버. <생략></p> <p><u>서. <신설></u></p> <p><u>어. <신설></u></p> <p><u>저. <신설></u></p> <p><u>처. <신설></u></p> <p>5. ~ 7. <생략></p> <p>② ~ ⑤ <생략></p>	<p>제51조(입찰보증금) ①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현금(채신관서 또는 「은행법」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, 외화(수출입시에 한한다. 이하 같다)로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정한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다.</p> <p>1. ~ 3. <현행과 같음></p> <p>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</p> <p>가. ~ 너. <현행과 같음></p> <p><u>다. 「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산수리협회</u></p> <p>러. ~ 버. <현행과 같음></p> <p><u>서. 「폐기물관리법」 제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</u></p> <p><u>어. 「공간정보산업 진흥법」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</u></p> <p><u>저. 「한국해양진흥공사법」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</u></p> <p><u>처.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의2에 따른 조달기업공제조합</u></p> <p>5. ~ 7. <현행과 같음></p> <p>② ~ ⑤ <현행과 같음></p>	<p>○ 「국가계약법」 준용</p>